

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1항 1호중 “총무국장”을 삭제하고 토지관리과장 다음에 “건설과장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 3 조(위원회 구성) ① 생략 1. 당연직 위원 : <u>부구청장, 총무국장, 도시국장, 세무과장, 지적과장, 지역경제과장, 토지관리과장(7명)</u> 2. 생 탁 ② 생 탁	제 3 조(위원회 구성) ① 현행과 같음 1. 당연직 위원 : <u>부구청장, 도시국장, 세무과장, 지적과장, 지역경제과장, 토지관리과장, 건설과장(7명)</u> 2.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